
	관 리 규 정	문서번호	OS A 0105	페이지
		제 정 일	2022.03.25	
	ESG 위원회 규정	개 정 일	2026.07.23	1/7
		개정번호	1	

[목 차]

- 제 1 조 [목적]
- 제 2 조 [적용범위]
- 제 3 조 [구성]
- 제 4 조 [위원장]
- 제 5 조 [회의]
- 제 6 조 [소집권자]
- 제 7 조 [소집절차]
- 제 8 조 [결의방법]
- 제 9 조 [부의사항]
- 제 10 조 [관계인의 출석 등]
- 제 11 조 [의사록 작성 및 자료보존]
- 제 12 조 [지원부서]
- 제 13 조 [규정의 제·개정]

부 칙

	관 리 규 정	문서번호	OS A 0105	페이지
		제 정 일	2022.03.25	
	ESG 위원회 규정	개 정 일	2026.07.23	2/7
		개정번호	1	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[목 적]

이 규정은 ESG 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 2 조 [적용범위]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3 조 [구 성]

-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	관 리 규 정	문서번호	OS A 0105	페이지
		제 정 일	2022.03.25	
	ESG 위원회 규정	개 정 일	2026.07.23	3/7
		개정번호	1	

제 4 조 [위원장]

- ①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
제 3 장 회 의

제 5 조 [회 의]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 반기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6 조 [소집권자]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	관 리 규 정	문서번호	OS A 0105	페이지
		제 정 일	2022.03.25	
	ESG 위원회 규정	개 정 일	2026.07.23	4/7
		개정번호	1	

제 7 조 [소집절차]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7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8 조 [결의방법]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
제 4장 권한 및 의무

제 9 조 [부의사항]

위원회의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

- ①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전략 및 정책의 수립
- ② ESG 경영을 위한 추진활동 및 이행 성과
- ③ 환경·사회·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10 조 [관계인의 출석 등]

	관 리 규 정	문서번호	OS A 0105	페이지
		제 정 일	2022.03.25	
	ESG 위원회 규정	개 정 일	2026.07.23	5/7
		개정번호	1	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에게 위원회 출석, 관련자료의 제출,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1 조 [의사록 작성 및 자료보존]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
제 5 장 보 칙

제 12 조 [지원부서]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.
- ② 지원부서는 ESG추진팀이 되며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한다.
- ③ 지원부서는 회의 소집통지, 부의 안건 정리, 의사록 작성, 부의 안건의 사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13 조 [규정의 제·개정]

이 규정의 제·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	관 리 규 정	문서번호	OS A 0105	페이지
		제 정 일	2022.03.25	
	ESG 위원회 규정	개 정 일	2026.07.23	6/7
		개정번호	1	

부 칙

제 1 조 [시행일]

1. 이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
